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9.(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3. 11. 17.
- 회부일 : 2023. 11. 20. (의안번호 : 23-148)

2. 제안이유

민선8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서 명칭 변경 및 소관 국 조정(안 제4조~14조)
 - 가. 행정지원국
 - 교육정책과 : 복지동행국 → 행정지원국 (소관 국 변경)
 - 나. 복지동행국
 - 주민생활복지과 → 복지정책과 (명칭변경)
 - 생활보장과, 장애인동행과 → 장애인사회보장과 (부서통합)
 - 아동청소년과 → 아동보육과 (명칭변경)

다. 관광경제국

- 일자리청년과 → 고용협력과 (명칭변경)

라. 재정관리국

- 디지털재정과 → 예산정책과, 스마트정책과 (부서분리 및 명칭변경)

마. 도시환경국

- 자원순환과 →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부서분리 및 명칭변경)

바. 교통건설국

- 부동산정보과 : 재정관리국 → 교통건설국 (소관 국 변경)

사. 사업소 : 폐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 : 2023. 11. 2. ~ 11. 7. (의견제출 1건 있음-교육정책과)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민선8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직개편 방향

- 민선8기 핵심가치 실현과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재정비
- 부서간 유사·중복업무 정비로 조직 및 인력구조 효율성 증대
- 구와 동의 업무 연계 강화 및 사업소 운영 체계 개선

□ 개편(안) 총괄

○ 행정기구 개편(안): +1과 +4팀, 사업소 폐지

현행	(본청)	6국	2담당관	34과	151팀	(사업소)	1사업소
	(보건소)	1소	4과	16팀		(동주민센터)	16동 50팀
개편	(본청)	6국	2담당관	35과	154팀		
	(보건소)	1소	4과	17팀		(동주민센터)	16동 50팀

○ 부서개편(안)

- (국간부서이동) 교육정책과 : 복지동행국 → 행정지원국
부동산정보과 : 재정관리국 → 교통건설국
- (통합) 생활보장과 + 장애인동행과 → 장애인사회보장과
마포중앙도서관 → 교육정책과 ※ 사업소 폐지
- (분리) 디지털재정과 → 예산정책과, 스마트정책과
자원순환과 →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 동주민센터 건제순 변경

- (현행) 행정지원, 통합민원, 주민복지 → (개편) 행정지원, 주민복지, 통합민원

○ 시행일: 2024. 2. 1.

□ 국간 부서 이동

구분	부서	국		비고
		현행	개편	
국간부서이동	교육정책과	복지동행국	행정지원국	국간 부서 조정
	부동산정보과	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 부서 개편

구분	부서		비 고
	현행	개편	
통합	생활보장과 장애인동행과	장애인사회보장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 통합
분리	디지털재정과	예산정책과 스마트정책과	예산업무 강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정책 발굴 및 추진
	자원순환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재활용 및 자원순환 정책 집중·강화
폐지	마포중앙도서관	(폐지)	도서관 업무 교육정책과로 이관
명칭변경	주민생활복지과	복지정책과	업무 명확화를 위한 명칭변경
	아동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일자리청년과	고용협력과	

□ 부서 간 팀 이동: 12팀

팀 (개편 팀)	부서		비 고
	현행	개편	
주거복지팀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유사업무 조정에 따른 팀 이동
장애인정책팀	장애인동행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생활보장과와 장애인동행과 통합에 따른 팀 이동
장애인자립팀			
아동보호팀	아동청소년과	가족행복지원과	부서 개편에 따른 팀 이동
청소년지원팀			
드림스타트팀			
어린이집사업팀 (공공보육팀)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부서 개편에 따른 팀 이동
어린이집지원팀 (민간보육팀)			
도서관진흥팀	마포중앙도서관	교육정책과	사업소 폐지에 따른 팀 이관
책문동행팀			
소금나루분관			
교육센터팀			

□ 팀 개편 (신설 5, 분리 5, 통합 4, 폐지 3, 명칭변경 18)

구분	부서 (개편부서)	팀		비 고
		현행	개편	
신설	복지정책과	-	실뿌리복지팀	실뿌리복지 확립 위한 팀 신설
	어르신동행과	-	어르신지원팀	공약사업 중점 추진 위한 팀 신설
	아동청소년과	-	아동시설팀	어린이집,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추진
	예산정책과 ^{신설}	-	미래전략사업팀	역점 및 전략사업 추진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팀	부서 분리에 따른 팀 신설
분리	감사담당관	청렴감사팀	감사팀 청렴인권팀	인권업무 중점 추진
	구민안전과	안전총괄팀	안전기획팀 재난관리팀	안전관련 업무 및 중요도 증가에 따른 팀 분리
	건강동행과	햇빛센터팀	햇빛센터팀 모자보건팀 예방접종팀	햇빛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팀 분리
	디지털재정과 (스마트정책과)	전산운영팀	디지털정책팀 지능정보화운영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정책 발굴 및 추진
	자원순환과	지역청결팀	지역청결팀 음식물관리팀	음식물 관리 업무 강화를 위한 팀 분리
	통합	교육정책과	교육혁신팀	평생교육팀
마포중앙도서관		교육센터팀		
마포중앙도서관		책문화동행팀 소금나루분관팀	도서관운영팀	효율적 조직운동을 위한 팀 통합
폐지	생활보장과	자활의료보장팀	-	기초보장팀·통합조사팀으로 업무 이관
	장애인동행과	장애인시설팀	-	장애인정책팀으로 업무 이관
	교육정책과	교육혁신팀	-	평생교육팀으로 업무 이관
명칭변경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총무팀	동주민센터 행정지원팀과 팀명 구분
	주민생활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기획팀	복지기획팀	부서명칭 변경에 의한 팀명 변경
		복지자원관리팀	복지자원	
		통합돌봄팀	지역복지팀	
장애인동행과 (장애인사회복지과)	장애인자립팀	장애인지원팀	부서통합에 따른 팀명 변경	
가족행복지원과	양성평등정책팀	가족정책팀	업무 명확화 및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명칭 변경	
	1인가구지원팀	가족지원팀		

구분	부서 (개편부서)	팀		비 고
		현행	개편	
	아동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아동정책팀	업무 명확화 및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팀명 변경
		어린이집사업팀	공공보육팀	
		어린이집지원팀	민간보육팀	
	마포중앙도서관	도서관진흥팀	도서관정책팀	사업소 폐지에 따른 팀명 변경
	일자리청년과 (고용협력과)	일자리지원팀	고용정책팀	부서명칭 변경 및 고용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팀명 변경
		일자리사업팀	고용사업팀	
		사회적경제팀	상생기반지원	
	디지털재정과 (예산정책과)	공기업팀	보조금관리팀	팀 업무 조정에 따른 팀명 변경 보조금사업 관리 강화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	방역대응팀	업무 명확화를 위한 명칭 변경
		마음건강팀	정신건강팀	
	건강동행과	건강생활팀	만성질환관리팀	

□ 부서 간 유사·중복업무 통합

부서		통합업무
현행	개편	
주민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주거복지업무 통합 후 어르신동행과로 이관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사업무
주민생활복지과	아동보육과	아동·청년통장사업
	가족행복지원과	1인 가구 행복한 밥상 사업
	어르신동행과	효도밥상 대상자 선정 업무 돌봄SOS 업무

□ 기구개편 세부내용

① 부구청장 직속: 2담당관 8팀 → 2담당관 9팀 (+1팀)

○ 팀 분리 : 청렴감사팀 → 감사팀, 청렴인권팀

< 현 행 >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4팀	4팀
새마포기획 새로운마포 더좋은마포 법무	청렴감사 조사 민원순찰 계약심사

< 개 편 안 >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4팀	5팀
새마포기획 새로운마포 더좋은마포 법무	감사 청렴인권 조사 민원순찰 계약심사

② 행정지원국: 5과 19팀 → 6과 24팀 (+1과 +5팀)

- 부서 이동 :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국」으로 이동
- 사업소 폐지 및 마포중앙도서관 직제 변경하여 교육정책과와 통합
- 팀 개편
 - (명칭 변경) 행정지원팀 → 총무팀
 - (팀 분리) 안전총괄팀 → 안전기획팀, 재난관리팀

< 현 행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구민안전과	민원여권과
4팀	4팀	3팀	4팀	4팀
행정지원 사학후생 교육후생 청사관리	동행협력 자치행정 동청사관 자치원봉	언론보 홍보채널 미디어채널	안전총괄 중대재해예 방위부 영상정보	민원행정 민원처 가족관계 등록권

< 개 편 안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구민안전과	교육정책과	민원여권과
4팀	4팀	3팀	5팀	4팀	4팀
총무 인사혁신 교육후생 청사관리	동행협력 자치행정 동청사관 자치원봉	언론보 홍보채널 미디어채널	안전기획 재난관리 중대재해예 방위부 영상정보	교육정책 평생교육 도서관 도서관운영	민원행정 민원처 가족관계 등록권

3 복지동행국: 7과 26팀 → 5과 23팀 (△2과 △3팀)

- 부서 이동 :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국」 으로 이동
- 부서 통합 : 생활보장과 + 장애인동행과 → 장애인사회보장과
- 부서 명칭 변경
- ① 주민생활복지과→복지정책과 ② 아동청소년과→아동보육과
- 팀 개편
- ① 신설 : 실뿌리복지팀, 어르신지원팀, 아동시설팀
- ② 명칭 변경

부서 (개편부서)	개편 전	개편 후
주민 생활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기획팀	복지기획팀
	복지자원관리팀	복지자원팀
	통합돌봄팀	지역복지팀
장애인동행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자립팀	장애인지원팀

부서 (개편부서)	개편 전	개편 후
가족 행복지원과	양성평등정책팀	가족정책팀
	1인가구지원팀	가족지원팀
아동 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아동정책팀
	어린이집사업팀	공공보육팀
	어린이집지원팀	민간보육팀

○ 부서 간 팀 이동

팀 (개편 팀)	부서	
	개편 전	개편 후
주거복지팀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정책팀	장애인동행과	장애인 사회보장과
장애인자립팀 (장애인지원팀)		

팀 (개편 팀)	부서	
	개편 전	개편 후
아동보호팀	아동 청소년과	가족 행복지원과
청소년지원팀		
드림스타트팀		
어린이집사업팀	가족 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어린이집지원팀		

< 현 행 >

주민생활 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 동행과	장애인 동행과	가족행복 지원과	아동 청소년과	교육정책과
4팀	5팀	3팀	3팀	4팀	4팀	3팀
생활복지기획 통합돌봄 복지자원관리 희망복지지원	기초보장 통합조사1 통합조사2 자활의료보장 주거복지	어르신정책 어르신시설 어르신돌봄	장애인정책 장애인시설 장애인자립	양성평등정책 어린이집사업 어린이집지원 1인가구지원	아동친화 아동보호 드림스타트 청소년지원	교육정책 교육혁신 평생교육

< 개 편 안 >

복지정책과	장애인 사회보장과	어르신 동행과	가족행복 지원과	아동보육과
6팀	5팀	4팀	4팀	4팀
복지기획 실뿌리복지 복지자원 지역복지	장애인정책 장애인지원 기초보장 통합조사1 통합조사2	어르신정책 어르신시설 어르신지원 어르신돌봄 주거복지	가족정책 가족지원 아동보호 청소년지원 드림스타트	아동정책 공공보육 민간보육 아동시설

4 **관광경제국: 5과 18팀 → 5과 18팀**

○ 일자리청년과 부서 및 팀 명칭 변경

- (부서 명칭) 일자리청년과→고용협력과

- (팀 명칭) 일자리지원팀→고용정책팀, 일자리사업팀→고용사업팀,
사회적경제팀→상생기반지원팀

< 현 행 >

관광정책과	경제진흥과	문화예술과	일자리청년과	체육진흥과
4팀	4팀	3팀	4팀	3팀
관광정책 관광사업 마포순환열차 레드로드발전소	경제총괄 시장활성화 생활경제 동물정책	문화예술기획 문화시설 문화사업	일자리지원 일자리사업 청년지원 사회적경제	체육정책 생활체육 체육시설

< 개 편 안 >

관광정책과	경제진흥과	문화예술과	고용협력과	체육진흥과
4팀	4팀	3팀	4팀	3팀
관광정책 관광사업 마포순환열차 레드로드발전소	경제총괄 시장활성화 생활경제 동물정책	문화예술기획 문화시설 문화사업	고용정책 고용사업 청년지원 상생기반지원	체육정책 생활체육 체육시설

5 재정관리국: 6과 25팀 → 6과 22팀 (△3팀)

- 부서 이동 : 부동산정보과 「교통건설국」으로 이동
- 부서 분리 : 디지털재정과 → 예산정책과^{예산}, 스마트정책과^{전산}

팀 개편

- (신설) 미래전략사업팀 ※ 역점·전략사업 수행
- (명칭 변경) 공기업팀→보조금관리팀
- ※ (업무) 보조금업무^{예산팀} + 공기업팀

< 현 행 >

디지털재정과	재 무 과	징 수 과	재 산 세 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
4팀	3팀	5팀	4팀	4팀	5팀
예 산 공 기 업 전 산 운 영 정 보 통 신	재 산 관 리 계 약 지 출	세 입 총 괄 38세금징수1 38세금징수2 세 외 징 수 교 통 체 납	재 산 세 1 재 산 세 2 법 인 과 표	지방소득세1 지방소득세2 주 민 세 자 동 차 세	부 동 산 행 정 지 적 관 리 지 가 조 사 부 동 산 거 래 관 리 도 로 명 주 소

< 개 편 안 >

예 산 정 책 과	스마트정책과	재 무 과	징 수 과	재 산 세 과	지방소득세과
3팀	3팀	3팀	5팀	4팀	4팀
예 산 보 조 금 관 리 미 래 전 략 사 업	디 지 털 정 책 지 능 정 보 화 운 영 정 보 통 신	재 산 관 리 계 약 지 출	세 입 총 괄 38세금징수1 38세금징수2 세 외 징 수 교 통 체 납	재 산 세 1 재 산 세 2 법 인 과 표	지 방 소 득 세 1 지 방 소 득 세 2 주 민 세 자 동 차 세

⑥ 도시환경국: 6과 29팀 → 7과 31팀 (+1과 +2팀)

○ 부서 분리: 자원순환과 →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 현 행 〉

주택상생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5팀	4팀	5팀	6팀	5팀	4팀
공동주택지원 임대사업 재개발지원 재건축지원 보상주택	청소행정 재활용관리 지역청결 시설장비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관리 역세권개발 전략사업	건축계획 건축지도 건축운영 공공건축 건축안전센터 건축물정비	환경정책 기피시설관리 환경지도 대기질관리 에너지관리	공원 녹색여가 가로정원 자연생태

〈 개 편 안 〉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5팀	3팀	3팀	5팀	6팀	5팀	4팀
공동주택지원 임대사업 재개발지원 재건축지원 보상주택	청소행정 지역청결 시설장비	자원순환 재활용관리 음식물관리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관리 역세권개발 전략사업	건축계획 건축지도 건축운영 공공건축 건축안전센터 건축물정비	환경정책 기피시설관리 환경지도 대기질관리 에너지관리	공원 녹색여가 가로정원 자연생태

7 교통건설국: 5과 22팀 → 6과 27팀 (+1과 +5팀)

○ 부서 이동 : 부동산정보과 「교통건설국」으로 이동

〈 현 행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보행행정과	도로개선과	물관리과
5팀	4팀	4팀	5팀	4팀
교통관리 주차장조성 자동차등록 자동차정비 교통개선	주차단속 주차장관리 주차세입 운수질서관리	보행행정 보상건설 가로정비 광고물	도로계획 도로관리 보도관리 지하안전굴착 도로조명	하수 치수 기전 하천

〈 개 편 안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보행행정과	도로개선과	물관리과	부동산정보과
5팀	4팀	4팀	5팀	4팀	5팀
교통관리 주차장조성 자동차등록 자동차정비 교통개선	주차단속 주차장관리 주차세입 운수질서관리	보행행정 보상건설 가로정비 광고물	도로계획 도로관리 보도관리 지하안전굴착 도로조명	하수 치수 기전 하천	부동산행정 지적관리 지가조사 부동산거래관리 도로명주소

8 보건소: 4과 16팀 → 4과 17팀 (+1팀)

○ 팀 개편

- (분리) 햇빛센터 → 햇빛센터모자보건팀, 예방접종팀
- (명칭 변경) 감염병대응팀 → 방역대응팀,
마음건강팀 → 정신건강팀
건강생활팀 → 만성질환관리팀

< 현 행 >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동행과	의약과
4팀	4팀	4팀	4팀
보건기획 감염병관리 마음건강	식식위공 식품생중 행안관위 정전리생	햇빛센터 건강문보 건강생활	의약검보 건지 무무진소

< 개 편 안 >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동행과	의약과
4팀	4팀	5팀	4팀
보건기획 감염병관리 방역대응 정신건강	식식위공 식품생중 행안관위 정전리생	햇빛센터 예방접종 건강문보 만성질환관리	의약검보 건지 무무진소

9 마포중앙도서관: 4팀 → 2팀 (△2팀)

- 사업소(마포중앙도서관) 조직 폐지
- 마포중앙도서관 직제 개편(5급→6급) 및 교육정책과와 통합
- 팀 개편
 - (통합) 책문화동행팀 + 소금나루분관팀 → 도서관운영팀
 - 교육혁신팀^{교육정책과} + 교육센터팀 → 평생교육팀

< 현 행 >

마포중앙도서관
4팀
도서관진흥 책문화동행 소금나루분관 교육센터



< 개 편 안 >

교육정책과
4팀
교육정책 평생교육 도서관정책 도서관운영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가치 실현과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재정비를 추진하고, 부서간 유사·중복업무 정비로 조직 및 인력구조 효율성 증대 및 구와 동의 업무 연계 강화 및 사업소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청 6국 2담당관 34과 151팀 1사업소에서 6국 2담당관 35과 154팀으로 변경하고 보건소 1소 4과 16팀에서 1소 4과 17팀으로 국 이관 2개과 9개팀, 사업소(마포중앙도서관)폐지 1개, 팀 개편에 따라 팀 신설 5개, 분리 5개, 통합 4개, 폐지 3개 명칭 변경 18개, 통합 1과, 3개팀, 부서간 팀이관 12개임.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시환경국의 자원순환과는 업무과중으로 직원들이 사기가 매우 저하된 점을 볼 때 조직개편을 통해 깨끗한마포과의 추가 신설로 청소업무와 자원순환업무를 분리 운용하여 현 마포구의 소각장문제와 재활용거점지역 활성화, 홍대관광특구 거리미관개선, 주민센터의 청소민원의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 디지털재정과를 예산정책과, 스마트정책과로의 분리 변경은 각각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됨.
- 다만, 생활보장과, 장애인동행과를 통합하여 장애인사회보장 과로 통합한 개편안은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

장의 선별적 복지을 지향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를 충족하기에는 부서의 업무량의 가중으로 직원의 능률이 저해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여 부서장은 직원들의 업무의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업무분장시 신경써야 할 것임.

- 또한, 마포중앙도서관은 사업소 폐지에 따라 교육지원과의 팀으로 기능을 축소하여 6급 팀장이 관리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장은 업무분장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명시된 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 점과 제2항에 국이나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팀 단위의 명칭은 집행부 정책의 행정 방향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지만 구민이 알기 쉬운 보편적 용어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행정기구 개편 후 사후조치가 늦지 않도록 구청 홈페이지, 청사 주변 안내표시, 공사현장 표기 등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민원업무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별표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1.] [다통령령 제33506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4. 19.>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구분		실·국의 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실·국의 수는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

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8.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1개의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실·국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실·국의 폐지 또는 존속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

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8의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 그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모든 구

나. 가목 외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구 중 1개의 구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